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수정 1 차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49,783,814	7,493,514
일반회계	205,204,939	6,156,148
특별회계	44,578,875	1,337,366
기타특별회계	44,578,875	1,337,36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45,519	97,366
수질개선특별회계	10,139,140	304,174
의료보호특별회계	320,832	9,625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200,549	66,016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4,671,731	140,152
장수한우거점시설특별회계	4,202,171	126,065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19,798,933	593,96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97,02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